

울산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가단1139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천성연
변 론 종 결 2022. 4. 1.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9. 11. 27.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17789호로 소외 B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911,479,711원 및 그 중 911,477,554원에 대한 2017. 11. 28.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9. 1. 10.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의 처인 C의 소유였는데, C는 2019. 8. 28. 사망하였고, 남편인 B과 자녀들인 피고, D이 C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다. 위 상속인들은 2019. 11. 27. C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2. 10.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8730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C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7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이 원고 등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3/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홍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울산 북구 E 대 159㎡

2. 울산 북구 E

[도로명주소] 울산 북구 F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93.03㎡

2층 83.94㎡

부속건물

블록조 스라브지붕 단층변소 2㎡. 끝.

